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군 인 의 지 위 및 복 무 에 관 한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본인 진료목적의 휴가가 30일로만 규정되어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고 30일 이상 장기간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휴가사용이 제한되어 장병 진료권을 제약하였음. 또한, 본인 진료목적의 휴가 관련 조항에 직계가족간호와 혼재되어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나. 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개인용무로 영외 출타가 필요한 경우에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개인용무를 해결할 수 있는 외출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요구.

다. 공가 사용 사유는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출장의 목적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구체화

라. 법령 상 규정없이 국방부 지침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간부 저축연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마.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계가족이라는 용어 대신 구체적인 가족의 대상을 규정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상 간호휴직 대상과 동일하게 구체화가 필요

- 바. 재해·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하여 시행하는 운영상의 형태를 고려 시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해 부여되는 특별휴가보다는 청원휴가의 취지에 적합하여 휴가분류를 조정
- 사.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과 동일하게 난임치료시술 청원휴가 일수의 확대가 필요함.
- 아. 공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비교적 짧은시간에 해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시간 단위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구됨.
- 자.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휴가제도 필요
- 차. 휴가 종류에 구분 없이 휴가 일수가 1개월 이상일 때 토·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상대적인 불이익 처우를 개선
- 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백신 접종이나 민간·군 의료기관에서 예방검사 등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이 부재하여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3. 주요내용

- 가. 본인 진료목적의 휴가를 ‘30일’을 ‘연간 30일’로 구체화하고 장기간

- 민간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30일 이상
휴가 사용을 허용하여 장병 진료권 확대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 나. 간부들이 1시간 단위 외출이 가능하고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안 제10조제8항 신설)
- 다. 공가 사유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국가기관에 소환
되었을 때’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제1호)
- 라. 간부 저축연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7항 신설)
- 마. 청원휴가에서 직계가족간호의 적용범위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제1호2 신설)
- 바. 특별휴가의 재해구호휴가를 청원휴가로 변경(안 제12조제12항 신설,
안 제13조제5항 삭제)
- 사. 난임치료시술 청원휴가 확대(안 제12조제8항)
- 아. 시간 단위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1조제1항)
- 자. 조산의 위험시 출산휴가를 최대 44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12조제2항제3호)
- 차. 휴가 중 토·공휴일 산입기준과 적용기간을 구체화(안 제9조제3항)
- 카. 감염병 발생시 확진검사, 예방접종 시 공가 사유를 신설하고 대상
감염병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향후 추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향후 추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을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 휴가기간의 합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로 한다.

제10조 "연가"를 "연가 등"으로 하고 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하사 이상 군인이 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로 지급되지 않는 미활용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 따라 그해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하사 이상 군인의 외출은 개인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서 1시간 단위로 신청하고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실시하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제12조제1항제1호의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1조제1항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을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하며, 같은항 제1호와 제8호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 각급

부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군 의료기관에서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는 등
군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접종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 30일 이내.”를 “필요할 때 :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청원휴가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는 군병원에서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로 하며, 제2항제3호의 “유산·사산의”을 “조산(早
産)·유산·사산의”로 한다. 또한, 제1항제1호2와 제8항, 제12항은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의한 사유 등으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본인의 간호가 필요할 때 : 연간 30일 이내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인 경우

가. 난자 채취가 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 난자 채취일 1일, 시술일
1일, 난자 채취일과 시술일의 전일 또는 난자 채취일과 시술일로부터
2일 이내의 날 중 2일

나. 난자 채취가 불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일 1일, 시술일 전·후일 중 1일

2. 남성인 경우 : 시술일 1일

⑫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제13조제5항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휴가의 종류) ①~② (생략)	제9조(휴가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u>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u>	③ ----- ----- -----. 다만, <u>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 휴가기간의 합이 30일 이상인 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u>
제10조(<u>연가</u>) ①~⑥ (생략)	제10조(<u>연가 등</u>) ①~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u>하사 이상 군인이 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로 지급되지 않는 미활용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 따라 그해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u>
< 신 설 >	⑧ <u>하사 이상 군인의 외출은 개인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서 1시간 단위로 신청하고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u>

제11조(공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
일 이내로 한다.

1.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
을 때

2.~7. (생략)

< 신 설 >

이나 부상으로 실시하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제12조제1항제1호
의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1조(공가) ① -----

----- 직접 필요한 기간
을 공가로-----

-----.

1. 공무와 관련하여 -----
----- 소환되었을
때

2.~7. (현행과 같음)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
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행정기관의 장, 각급 부대
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
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로
서 군 의료기관에서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는 등 군 의료기
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접종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청원휴가) ① -----

-----.

1. -----
----- 필요할 때 :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청원휴가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는 군병원에서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의한 사유 등으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본인의 간호가 필요할 때 : 연간 30일

② (생략)

1. ~ 2. (생략)

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
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
우

③~⑦ (생략)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
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
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
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
다.

⑨~⑩ (생략)

< 신 설 >

이내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조산(早産)·유산·사산의 -----

--

③~⑦ (현행과 같음)

⑧ -----

다음 각 호에 따라 난임치료시
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인 경우

가. 난자 채취가 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 난자 채취일 1일,
시술일 1일, 난자 채취일과 시
술일의 전일 또는 난자 채취일
과 시술일로부터 2일 이내의
날 중 2일

나. 난자 채취가 불필요한 시술
을 받는 경우 : 시술일 1일, 시
술일 전·후일 중 1일

2. 남성인 경우 : 시술일 1일

⑨~⑩ (현행과 같음)

⑫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

제13조(특별휴가) ①~④ (생략)

⑤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 ①~④ (현행과 같음)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	
연 락 처	(02) 748 - 5167